

등록번호	여성가족과-18130
등록일자	2015.5.19.
결재일자	2015.5.19.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주무관	여성정책팀장	여성가족과장	복지환경국장	
정미옥	代정미옥	유정택	전결 05/19 유용렬	
협 조	자치행정과장 권철희			

2015년 「모범 여성지도자상」 시상 계획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2015년 「모범 여성지도자상」 시상 계획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모범구민을 발굴·시상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하고 중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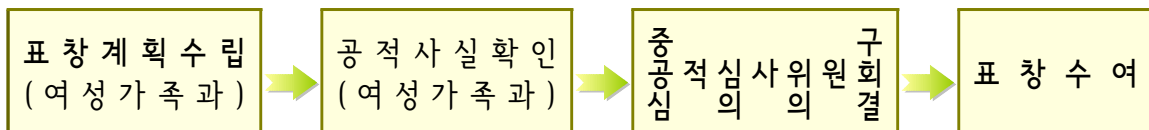
□ 표창근거

-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 제5조(표창장)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표창종류 : 표창장
- 표창인원 : 1명
- 표창시기 : 2015. 5월 중
- 부 상 : 없음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 기부금지 조항)

□ 표창절차



□ 표창제한

- 법령 등에 따른 부적격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

- 금고 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
-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일반적인 추천제한

- 동일한 공적에 대한 이중표창 금지(중구 표창 조례 제14조)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의 조직 기여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단체나 협회의 공동업적을 개인의 것으로 작성하거나 허위·과장한 경우

□ 표창계획

○ 선정기준

- **지역사회에서의 활동 공적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어려운 이웃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자
 -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구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에 공이 현저한 자 등

○ 심사방법 : 중구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의결(서면심의)

- 위원장 : 부구청장
- 위 원 : 6명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복지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국장, 보건소장

- 심사·의결 : 공적조서 및 증빙자료에 대한 심사·의결(서면의결 가능)

표창장 제작

- 표창문안 : 별첨
- 소요예산 : 8,400원×1조 = 8,400원
- 예산과목 : 여성가족과, 보육,가족 및 여성복지 증진, 여성의 복지향상, 여성행사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추진일정

- 중구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서면) : '15. 5. 19.
- 표창장 제작·배부

붙임 : 표창장(안) 끝.